

안산시 특정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8-507
----------	-------

제출년월일 : 2020. 11. .

제출자 : 안산시장

□ 제안이유

-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노후 건설기계를 저공해조치 의무대상에 포함시키고,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폐지되고, 「대기 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효과적인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의 폐지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 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조문정비(안 제1조, 제2조, 제6조, 제8조)
- 특정건설기계 정의 신설(안 제2조)
- 노후 건설기계를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에 포함(안 제4조)
 - 현재 : 특정경유자동차
 - 개정(안) : 특정경유자동차 및 특정건설기계(약칭 “의무대상 자동차”)
- 조기폐차 권고 대상 범위 확대(안 제5조)
 - 제한적인 권리 기준 삭제
- 저공해조치 이행기간 유예 규정 신설(안 제6조)
 - 조치이행기간 유예 기준 명확화

□ 개정조례안 : 붙임1

□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2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3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사항 없음
- 예산수반사항 : 붙임4
- 사전예고(결과) : 의견없음
 - 입법예고 : 2020. 10. 8. ~ 2020. 10. 28. (20일간)
- 기타 참고사항
 - 현행조례 : 붙임5
 - 방침결정문 : 붙임6

< 불임 1 >

안산시 특정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특정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안산시 특정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안산시 자동차 등의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에 따른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 저공해를 촉진하고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 중 “법 제60조 또는 특별법 제26조”를 각각 “법 제60조”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특정경유자동차”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저공해조치”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 가.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
 - 나.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 다. 조기폐차
5. “특정건설기계”란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자동차”를 “저공해조치 의무대상 자동차(특정경유자동차, 특정건설기계를 말한다. 이하 “의무대상 자동차”라 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특정경유자동차”를 “제3조제1항에서 정한 의무대상 자동차”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자동차”를 “의무대상 자동차”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동차(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을 “의무대상 자동차(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무대상 자동차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제1항 중 “자동차”를 “의무대상 자동차”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 및 제5조”를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특정경유 자동차가 특별법 제25조제2항”을 “의무대상 자동차가 특별법 제26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자동차”를 “의무대상 자동차”로 한다.

3. 해당 의무대상 자동차의 소유자가 조기에 폐차를 하려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 때

제7조제1항 중 “자동차정비”를 “정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동차의”를 “의무대상 자동차의”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은”을 “시장은 법 제58조 및 특별법 제39조에 따라”로, “자동차”를 “의무대상 자동차”로, “법위에서 한 차례만 필요한 경비를 그 소유자에게”를 “법위에서 필요한 자금을”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		환경정책과
입 안 자	실·과장 직위·성명	환경정책과장 신 향 식
	담당·팀장 직위·성명	미세먼지정책팀장 박 현 우
	담당자 성명·전화	풍 지 선 (행정 2247)

< 불임 2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안산시 특정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u>	<u>안산시 자동차등의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u>
<u>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및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안산시 대기환경 보전 및 개선을 위하여 특정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	<u>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에 따른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 저공해를 촉진하고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
<u>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u>	<u>제2조(정의) -----</u>
<u>1. “특정경유자동차”란 「수도권 대기 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중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에 따른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를 말한다.</u>	<u>1. “특정경유자동차”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u>
<u>2. “저공해 조치”란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조기에 폐차하는 것을 말한다.</u>	<u>2. “저공해조치”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u>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 나.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다. 조기폐차

3. “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법 제60조 또는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인증 받은 장치를 말한다.

4. “저공해엔진” 이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법 제60조 또는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인증 받은 장치를 말한다.

<신 설>

제3조(조치 및 방법)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안산시 지역의 대기환경 보전 및 개선을 위하여 운행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해당 차량의 저공해 조치를 명령하거나 폐차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4조(의무대상 자동차) ①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는 특정경유자동차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무대상 자동차에서 제외한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 엔진이 인증·보급되지 않은 자동차

2. (생 략)

3. 법 제12조제13호나목에 따른 자동차

3. - 법 제60조 -

4. -----

법 제60조

-----.

5. “특정건설기계”란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제3조(조치 및 방법) ① 저공해조치 의무대상 자동차(특정경유자동차, 특정건설기계를 말한다. 이하 “의무대상 자동차”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의무대상 자동차) ① -----
----- 제3조제1항에서 정한
의무대상 자동차-----.

②

1. ----- 의무대상 자동차

2. (현행과 같음)

〈작 제〉

4. (생 략)

제5조(조치명령) ① (생 략)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동차 노후 등으로 저공해 조치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자동차(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1. 차령이 15년 이상인 자동차

2. 시장이 제1항의 명령에 따른 특별법 제26조의 4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차량

제6조(조치기간)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의 소유자는 저공해 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저공해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년(제1호의 경우는 검사유효기간을 말한다. 제3항에서 같다)의 범위에서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을 유예할 수 있다.

1. 특정경유자동차가 특별법 제25조 제2항에 따른 정밀검사결과 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때

2. (생 략)

<신 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조치기간을 유예한 자동차의 소유자가 그 유예기간 내에 동일한

4. (현행과 같음)

제5조(조치명령) ① (현행과 같음)

② -----

----- 의무대상 자동차(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무대상 자동차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

-----.

<삭 제>

<삭 제>

제6조(조치기간) ① -----
의무대상 자동차의 -----

-----.

② ----- 제1항-----

-----.

1. 의무대상 자동차가 특별법 제26조 제2항-----

2. (현행과 같음)

3. 해당 의무대상 자동차의 소유자가 조기에 폐차를 하려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 때

③ -----
-의무대상 자동차-----

사유로 해당 이행기간 재연장을 신청할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제7조(정비·폐차권고) ① 시장은 의무대상 자동차의 정비 상태 불량 등의 원인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하더라도 해당 배출가스의 저감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그 소유자에게 자동차정비를 선행한 후 제5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가 제1 항의 권고에 따라 자동차 정비 후 제5조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더라도 법 및 특별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유지 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소유자에게 조기폐차를 권고할 수 있다.

제8조(재정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고를 이행한 자동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필요한 경비를 그 소유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 2. (생략)

제7조(정비·폐차권고) ① -----

정비

② ----- 의무대상 자동차의 -----

제8조(재정지원) 시장은 법 제58조 및 특별법 제39조에 따라 -----
의무대상 자동차-----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

1. · 2. (현행과 같음)